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통한 전자원문서비스 실현

Realization of Electronic Document Delivery Service through Extended Collective License

유수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yosu@kisti.re.kr

Suhyeon Yoo,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IT 기술에 의해 정보유통 환경이 진화하면서, 정보 획득의 방법에 있어서 웹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전자원문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개별적인 허락없이 해외 학술자료의 전자원문서비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저작권법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자원문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ECL)는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지 않는 권리자에게로 이용허락계약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ECL을 통해 국내 어문저작물의 복제·전송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신탁관리하는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해외 학술자료의 이용에 대해서도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도서관은 진정한 전자원문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원문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의 합리적인 준수는 물론, 학술정보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IT와 웹 기술에 의해 정보유통 환경이 진화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포털 등의 정보검색 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관련된 단어를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추천어 서비스, 검색된 자료와 유사한 사이트 및 자료를 보여주는 서비스, 구글의 Wonder Wheel과 같은 유사어 검색 서비스 등이 그 일례이다.

더군다나 전자저널 등 디지털 자료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원하는 자료를 자신의 컴퓨터에서 열람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가 확산되고 있고, 이렇게 원문(full text)을 열람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기대 또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해외 우수 정보서비스 기관에서는 저

작권이 보호되는 웹기반의 원문제공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용자의 원문수요 요구에 즉각적으로 부응하고 있다.

영국 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은 2003-2004년 170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200대의 복사기 대신 150대의 스캐너를 구입하고, 전자원문전송서비스인 SED(Secure Electronic Delivery) 서비스를 개발하여, 원문서비스(Document Delivery Service)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Yoo 2006). 운영 시스템의 개선 후, 원문의 전자전송(SED, Post to Web, Direct Download, Ariel 포함)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원문서비스 이용자의 30% 이상은 SED를 통해 전자로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캐나다 국립 과학기술정보 연구소인 CISTI(Canada Institute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가 2003년말 개

발한 원문의 전자전송서비스인 SDD(Secure Document Delivery) 서비스는,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서비스 개시후 캐나다 연방정부상을 2회 수상하고, Outsell사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5대 주요 원문서비스 기관 중 고객만족도 1위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이 2006년 해외 정보서비스 기관과 동일한 기능으로 원문의 전자전송이 가능한 eDDS(electronic Document Delivery Service)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초 한국교육학술정보원(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에서 개발한 dCUBE가 대학도서관간 상호대차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상 이용자의 데스크탑으로 원문을 전송하는 전자원문서비스의 운영에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해외 학술자료의 경우 저작권의 권리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개별적인 허락없이 해외 학술자료의 전자원문서비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전자원문서비스의 특성을 살펴보고, 디지털 시대 새로운 정보유통 방안인 전자원문서비스를 제약하는 저작권법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원문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저작권의 합리적인 준수와 동시에 학술정보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2. 전자원문서비스 개념과 특성

도서관·정보센터는 개별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자관에 없는 자료를 타 도서관에 요청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상호대차(InterLibrary Loan) 서비스는 정보서비스의 핵심으로, 급증하는 정보자료 구입비용에 대해 도서관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전자원문서비스(Electronic Document Delivery Service)는 상호대차의 한 방법으로 자료를 요청한 도서관 및 이용자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Arte 등(2003)의 연구에 의하면 전자원문서비스는 자료를 복사하여 우편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원문서비스(Document Delivery Service)에 비해 복사 및 제공시간을 현격히 단축시키며, 자료의 품질이 우수하고, 약 20-25%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의 소장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직접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되며,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해외에서는 전자원문서비스가 도서관간의 주요 정보유통 채널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Tuck(1997)은 전자원문서비스를 E(DD)와 (ED)D로 구별하였는데, E(DD)(:Electronic Document Delivery)는 인쇄형태의 자료를 전자적 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이며, (ED)D (:Electronic Document) Delivery)는 전자적 형태로 출판된 자료를 전자적 수단으로 전송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원문제공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스캔하여 제공(Scan on demand)하는 서비스와 출판사로부터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제공받거나, 스캔한 자료를 아카이빙하여 요청이 있을 시 DB에서 검색하여 제공(Store at source)하는 서비스로도 구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언급하는 전자원문서비스는 그

대상이 국내외 학술정보로, 특히 해외 학술정보의 전자원문서서비스에 있어서, 디지털 아카이빙의 문제로 인해 (ED)D와 Store at source 서비스는 제외하고 인쇄형태의 자료를 스캔하여 요청이 있을시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를 고려하고자 한다.

3. 현행 저작권법과 전자원문서서비스

3.1 저작권 제한규정

저작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부합하여 저작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의하면, 도서관이 (i)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ii)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iii)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를 위하여 도서관 내에서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것(관내 전송)과 다른 도서관 이용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것(관외 전송)을 허용하고 있다.

3.2 전자원문서서비스 관련 저작권 이슈

전자원문서서비스는 디지털 복제와 전송이라는 측면에서 저작권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다. 전자형태의 정보는 신속하고 용이하게 복제할 수 있으며, 순식간에 다수를 대상으로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원문서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해외 우수 정보서비스 기관의 전자원문서서비스는 저작권 권리처리가 해결된 자료들을 서비스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도서관 등 정보센터에서 원문을 개인 이용자에게 복제·전송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처리할 수 있는 저작권 권리처리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상업 혹은 비상업 기관이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이용 행위(복제·전송 등)에 따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저작권자가 정해놓은 로열티를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CCC(Copyright Clearing Center)와 영국의 CLA(Copyright License Agency) 등이 있다. 영국 국립도서관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뿐만 아니라 개별 출판사와의 협상을 통해 더 나은 조건에서 이용자가 원문을 전송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은 필요한 경우 저작권을 제한하는 제한규정으로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서 규정한 항목에 한하여 저작권의 제한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도서관으로 전자원문서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상은, 관외 전송 규정에 의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로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도서가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즉, 전자원문서서비스가 가능한 자료는 비매용이거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전부 또는 일부 판매용 자료로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도서관으로만 전송이 가능하므로, 개인이용자는 도서관에 방문하여 사서가 출력해 준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도서관간 상호대차의 주 대상은 학술정보로, 국내 학술자료는 전자원문서서비스가 아니

더라도 상업 데이터베이스제작 기관이나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을 통해 유료 혹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학술자료가 아닌 해외 학술자료의 경우, 해외에서 발행되어 저작권이 해외에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위에서 언급한대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관외전송 항목을 적용하여 전자원문서 서비스를 하더라도 5년이 지난 판매용 자료이면서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지 않는 자료는 극히 드물 것이다. 특히 정보의 유통속도가 중요한 과학·기술·의학 분야의 학술정보의 경우, 5년이라는 시한으로 인해 급변하는 정보 환경에 대한 적응이 느려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해외 학술자료에 대한 전자원문서서비스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용자는 이용자의 데스크탑에서 원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방문하여 인쇄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진정한 전자원문서서비스를 실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저작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도서관·정보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해외 학술정보를 다른 도서관 혹은 개인 이용자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 저작권자와의 접촉을 통해 이용허락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하더라도, 저작권자를 찾아내서 이용허락을 받기까지의 상당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소요된다. 이러한 막대한 거래비용 때문에 구글의 도서검색 서비스(Google Book Search)도 세계 유명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개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아닌, Opt-out 정책을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구글의 도서검색 서비스는 전세계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논란 속에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보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유수현 2010).

4.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4.1 ECL 개요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se : ECL)는 상당수 권리자를 대표하는 집중관리단체가 그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권리자들의 특정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곧,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저작권자들의 저작물도, 그 저작물이 특별히 집중관리에 포함될 것을 배제하지 않는 한, 집중관리단체가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저작물에 포함된다(이대회 2010).

집중관리단체에 저작물을 신탁양도하지 않았는데, ECL을 통해 이용허락되는 것을 원치 않는 권리자는 집중관리 참여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Opt-out) 선택안이 주어진다.

ECL은 권리자의 숫자가 매우 많으며, 권리자들이 산재해 있고, 권리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하다. ECL은 개별적인 이용허락을 위하여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고, 법률적으로 매우 간단하며 침해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때문에 법률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한편, 저작권자에게도 이익을 제공한다. 구글도서검색 서비스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 이용자를 상대로 디지털화된 자료의 검색서비스 및 판매가 가능하고, 기관 이용자로 하여금 검색서비스를 구독하도록 하여 오프라인 시장의 한계를 온라인에서 확대시킴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현재 ECL은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5개의 북유럽 국가들이 약 30여년 전부터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덴마크에서는 교아저작물이나 공연방송의 문화적 유산을 디지털화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 EC(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화

및 온라인상의 배포를 위한 간편하고 비용효율적인 권리처리 해결방안 중의 하나로 ECL을 상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문화체육관광부 2008), 우리나라의 경우 집중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집중관리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ECL을 도입함에 있어서 교육을 위한 이용분야,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을 위한 이용분야 등 공익적인 분야에 우선적으로 한정적인 시행을 해 볼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4.2 ECL과 전자원문서서비스

ECL은 집중관리단체에 비신탁되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집중관리단체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규정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ECL을 통해 우리나라 저작물의 복제·전송에 대한 집중관리단체로 대표되는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Korea Reprographic and Transmission Rights Association)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비신탁 저작물-특히 해외학술저작물에 대해서 이용허락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저작권자의 개별적인 허락 없이도 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통해 이용허락을 구하고 합리적인 보상료 지급을 통해 저작물을 디지털 복제·전송하여 전자원문서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ECL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ECL은 급진적인 해결책에 해당하므로, ECL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공익의 존재가 분명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대회(2010)는 그의 논문에서 디지털도서관 실현에 있어서 고아저작물의 해결방안으로 ECL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 논문에 의하면, 과거

의 기록물을 주문형의 형태로 이용제공하는 것도 공익에 해당하며, 도서관 장서를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는 것은 국민에 의한 지식활용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에 해당하므로 공익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ECL 채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전자원문서서비스는 도서관간 상호대차 서비스로 도서관의 존립 목적 자체가 공익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상호대차 서비스 또한 학술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지식수준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충분히 공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CL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집중관리단체가 ‘상당한 숫자(substantial or considerable number)’의 권리자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당한 숫자는 특정 유형 권리자의 최소한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최소한 어문저작물에 관한 한 집중관리단체들이 활발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들 어문저작물 권리자들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대리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ECL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문제점이 없을 것(이대회 2010)으로 보인다.

그러나 ECL 도입시 외국인 저작물의 경우,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외국인이 알기 어렵고, 집중관리단체의 분배관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경우에 외국인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국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국내외 집중관리단체 간의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권리처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해외 학술자료의 디지털 복제 및 전송을 수반하는 전자원문서서비스는 국내외 집중관리단체 간(예를 들어,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및 CCC 간) 협약을 통해 권리처리를 해결하고, ECL 도입을 통해 개별 이용허락의 번거로움과 시간·비용의 소모를 줄이고, 보다 활발한 정보유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전자원문서서비스는 저작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처리를 통해 저작물을 안전하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2004년 경부터 전자원문서서비스를 도서관간은 물론, 개인 이용자에게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저작권 권리처리를 해결하였다. 그 주요한 방법으로는 도서관·정보센터가 전자원문서서비스를 실시하면서 권리가 자신의 권리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신탁하면서 지정한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이며, 차선으로는 개별 출판사와의 협약을 통해 학술·연구 목적을 위해 더 나은 조건으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경우, 저작권을 제한하는 규정 중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규정(제31조)은, 관내 전송과 관외 전송을 구별하여 저작권을 상세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도서관의 서비스를 염두에 둔 조항이나, 그 내용이 전통적인 도서관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원문의 전자 전송과 같은 IT 기술의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원문을 전자 전송하기 위해서는 ECL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CL은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지 않는 권리자에게로 이용허락계약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국내 학술정보에 대해 디지털 복제·전송권을 신탁하고 있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해외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허락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술정보의 합법적이면서도 신속한 유통이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2008. "미국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연수보고서." [online]. [cited 2010. 8. 9]. <www.kofoco.or.kr/renew/business/file/2008/02.pdf>.
- 유수현. 2010. 구글 도서검색과 디지털 도서관 실현의 문제점. 「계간저작권」, 23(1): 38-55.
- 이대희. 2010. 전자출판 및 디지털도서관 실현 방안. 「계간저작권」, 23(1): 4-25.
- Arte, Assunta et al.. "A Web-based document delivery system for scientific information management in Italian research libraries." *Interlending & Document Supply*, 31(2): 111-116.
- Tuck, Bill. 1997. "Document delivery in an electronic world." *Interlending & Document Supply*, 25(1): 11-17.
- Yoo, Suhyeon, Choi, Heeyoon. 2006. "Analysis on Current Issues and Cases of Electronic Document Delivery Service for Sharing of Knowledge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3(2): 81-96.
- "Secure Electronic Delivery." [online]. [cited 2010. 8. 9]. <<http://www.bl.uk/sed>>.